



# KAIST IP 정책 및 기술이전 솔직분기점

2008. 1. 24(목)

**KAIST**

기술사업화팀장 이인희

# KAIST IP 정책

# 1. KAIST의 연구수탁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일반수탁		정부수탁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	262	105	690	865	952	970
2005	327	169	728	893	1,055	1,062
2006	350	160	765	1,016	1,115	1,176
2007. 10	243	172	725	986	968	1,158

## 2.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

### What to Do

#### 전통적 대학

- 대학 명성과 정부 지원
- 기초 연구
- 기초 지식 증진/교육
- 대학의 전문적, 제도적 인정
- 논문 등

#### 기업가적 대학

- 다학제적인 기초연구
- 경제적 이득 추구
-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 지역 및 국가경제 기여
- 지식재산권(특허 등)

### 3. IP 전략 변화의 필요성

- 기존 IP 전략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의 변화와 노력의 요구가 필요
  - 총장님의 새로운 IP 전략 변화와도 부합됨
- 학교와 비즈니스가 같이 갈수 있는가 ?
  - 같이 갈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 비즈니스는 학교가 세상을 위해 해야 할 많은 일중 일부

선두주자(first  
mover) 전략으로 전  
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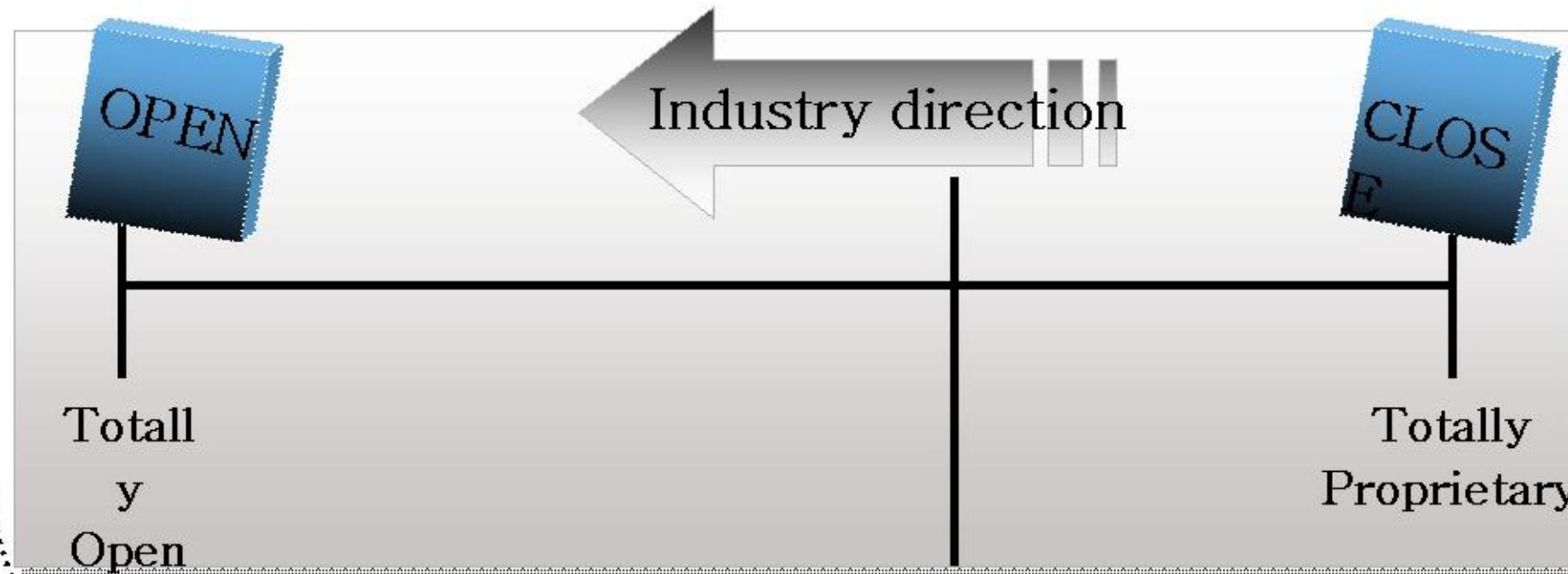


높은 불확실성  
최소화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 4. 대안은 ?

오늘날 산업은 균형점을 추구한다



**IP 정책의 변화 시도**

## 5. 개정

### : KAIST-기업간 "연구계약서" 중 IP 관련조항 개정

- 현재까지 기업과의 수탁연구과제 계약시 여러가지 요인으로 기업이 특허권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나,
- KAIST는 선진대학과 같은 수준의 특허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총장님의 기본적인 철학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계약서 중 특허권에 대한 조항 개정
- 기업이 특허권을 소유할 경우 학교에서의 연속적인 모든 연구 결과가 기업에 종속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특허권은 KAIST가 소유하고, 기업은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 새로운 연구계약서를 적용으로 산업체 연구과제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필요로하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응할 것으로 판단
- 장기적인 안목으로 KAIST의 특허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주요항목	개정내용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AIST 단독소유이며, 기업에게는 라이센싱 옵션권 부여</li> </ul>
특허 비용 (증원, 등록,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이 “<b>라이센싱옵션권</b>”을 행사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선택시 : <b>기업부담</b></li> </ul> </li> </ul>
라이센싱 옵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기업이 전용실시권 선택시 : 유상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점적 권한부여, 실시분야한정, 제3자실시 부여 가능</li> </ul> </li> <li><b>기업이 통상실시권 선택시 : 무상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독점적 권한부여, 양도불가, 제3자실시 부여 불능</li> </ul> </li> </ul>
공동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교류,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으로 착상하여 구체화한 발명에 대하여는 공동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비용 : <b>기업부담</b></li> <li>기업과 KAIST는 상호 허락없이 제3자실시 가능</li> </ul> </li> </ul>
선행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수행 이전에 KAIST가 개발하고 보유한 선행특허를 기업이 사용할 경우 별도의 기술실시계약 체결</li> </ul>

## 제9조(무형적 재산의 규속)

- ① 본 연구 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 저작물 기타의 일체의 무형적 성과물(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일체의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 포함한다) (이하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은 **“과기원”的 소유로 한다**
- ② 제1항에 있어, “과기원”은 자유재량으로 “발명 등”에 대하여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특허출원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과기원”的 명의**로 “발명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 출원, 등록 및 유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的 부담으로 한다**.
- ③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실행 과정에서 **“위탁자”와 “과기원”이 공동으로 작성** 및 공동연구를 수행, 그 연구결과가 공동수행의 결과로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 발명 확인서를 제출하고, **상당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 및 공동 출원** 할 수 있다.

④ (라이센싱 옵션) 본조 제1항의 “발명 등”에 대하여 “과기원”은 “위탁자”에게 “위탁자”的 내부연구 목적으로 무상, 양도 불가, 서브라이센스 불가의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부여** 한다. 이에 더하여 “위탁자”는 “과기원”으로부터 제6조의 최종 보고서를 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기원”에게 서면 고지**로써 아래의 **2가지 라이센스 옵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자격을** 가진다. 옵션을 행사한 경우,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를 위한 **제반 비용 부담 및 관리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1. 무상(Royalty-free)의 비독점적 라이센스 (Non-exclusive License): 한국을 포함하여 “위탁자”가 선택하는 국가에서 “발명 등”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제조의뢰, 사용, 대여, 판매 및 수입에 대한, 서브라이센스

**권리가 없고, 양도 불가능한 무기한의 비독점적 무상(Royalty-free) 라이센스.**

2. 유상(Royalty-bearing)의 독점적 라이센스 (Exclusive License): 한국을 포함하여 “위탁자”가 선택하는 국가에서 “발명 등”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제조의뢰, 사용, 대여, 판매 및 수입에 대한, 서브라이센스

**권리가 있는, 양도불가능한 최소 [ ]년간 유효한, 로열티 지불형 (Royalty-bearing)의 독점적 라이센스.**

⑤ 위 제4항의 1호, 2호에 따라 “위탁자”가 선택한  
**라이센스의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의 계약서(“라이센스 계약서”)**에 의하기로 하며  
당해 라이센스는 당사자가 “라이센스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때로부터 유효한다

## 제10조(선행기술 및 지적재산권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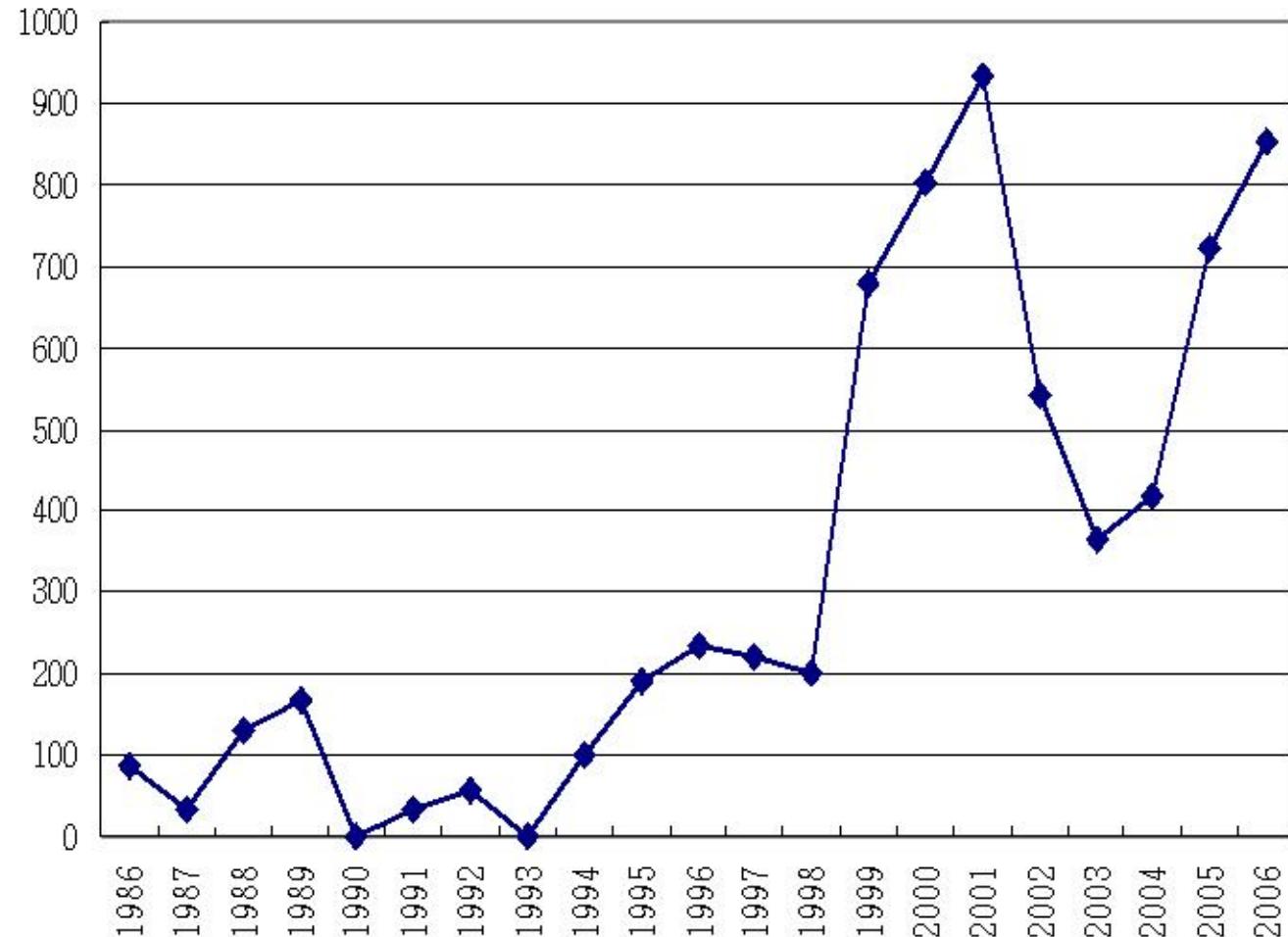
본 연구수행 이전에 “과기원”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선행 기술 및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거나 “위탁자”가 본 연구 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선행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선행 기술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협의 및 실시료는 이 계약과는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대학 ITO 조작 솔루션 기점

# 1. KAIST 기술이전 현황

년도	기술이전 수입금
1986	86
1987	32
1988	129
1989	166
1990	-
1991	34
1992	58
1993	-
1994	101
1995	190
1996	234
1997	222
1998	202
1999	679
2000	803
2001	933
2002	542
2003	363
2004	418
2005	722
2006	853



## 2. KAIST 현황

- 소요비용 : 약 30억원

- 특허비용 약 20억, 인건비 5억, 부대비용 5억

- 기술이전 수입

- 2007년도 기술이전수입 15억

- \* 인센티브지급 9.45억, 특허비용 1.50억, 학교수입 4.05억

- 학교 순수입 : 5.55억원

- 손익 분기점 : 기술료 수입 80억

-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2006년까지의 기술이전 주이로 분석한

- **80억 수익예상시점은 약 2020년도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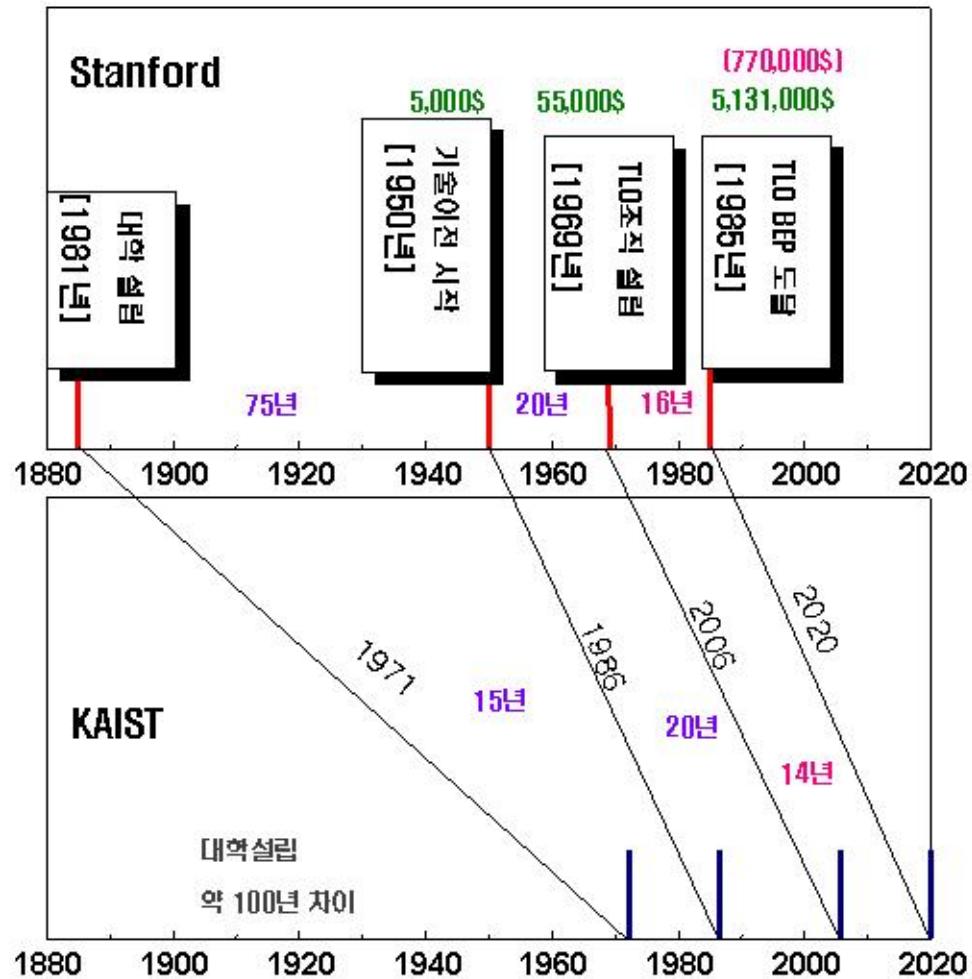
### 3. 미주/유럽지역 TLO 손익분기점

→ 미주 및 유럽지역 공공기관 TLO의 BEP  
(Breakeven Point) 도달시기

[공공TLO, 방문조사 05.12]

대학		BEP소요기간
미주 지역	UBC	15년 정도
	조지아공대	10년~15년
	메릴랜드대	10년 이상
	UC버클리	10년~15년
유럽 지역	옥스퍼드대학 (ISIS이노베이션)	10년 이상
	캠브리지대학 (CE)	10년 이상
	에콜폴리텍	7~8년

## 4. 스탠퍼드와 KAIST의 HISTORY



### ○ Stanford vs. KAIST

✓ 대학설립: 약100년 차이

- 1885년 (Stanford)
- 1971년 (KAIST)

✓ TLO조직설립 ~ BEP도달시간

- 16년 (Stanford)
- 14년 (KAIST)

✓ 기술이전시작 ~ BEP도달시간

- 36년 (Stanford)
- 34년 (KAIST)

## 5. KAIST 기술이전수입금 현황/예측

